

이란(Iran)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53년
- 현행법 : 1975년(사회보장); 1986년(자영자 보험), 1987년 시행; 2000년(영업용 운전자 적용); 2009년(카펫방직공 및 수공업업자 적용); 2013(부분연금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근로자, 자영자, 전업주부
 - 근로자에 영업용 운전자, 건설근로자, 특정카펫방직공, 수공업업자, 특별제도에서 제외된 공공부문 근로자 포함
 - 자영자 및 전업주부는 노령연금, 유족연금, 장애연금에 대해 다른 적용 수준을 선택 가능
- 임의적용 : 종전 당연적용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인 50세 이하인 자
- 특별적용 : 일부 공공부문 근로자 및 군인은 별도 사회보험제도 존재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월소득의 5%; 영업용 운전자는 9.5%
 - 임의가입자는 노령·장애·유족급여의 재원으로 월소득의 18% 납입
 - 근로자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소득월액 : 비숙련노동자의 법정월최저임금(11,112,690 rials)
 - ※ 가입자의 보험료는 질병, 출산, 산재 급여의 재원이기도 함
- 자영자
 - 보험적용 수준에 따라, 소득의 18%(노령, 장애, 유족); 소득의 14%(노령, 유족); 또는 소득의 12%(노령)
 - ※ 자영자의 보험료는 산재 급여의 재원이기도 함(단, 노령연금 단일 적용 근로자 제외)
- 사용자
 - 임금지급총액의 14%
 - 근로자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소득월액 : 비숙련노동자의 법정월최저임금(11,112,690 rials)
 - ※ 사용자의 보험료는 질병, 출산, 산재 급여의 재원이기도 함

○ 정 부

- 근로자, 자영자, 임의가입자를 위해 소득의 2%
 - 영업용 운전자를 위해 9.5%
 - 특정 전략산업분야 기업 및 영업용 운전자에 대해 정부가 사업장근로자 5명까지 사용자의 보험료 대신 납부
 - 근로자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 소득월액 : 비숙련노동자의 법정 월 최저임금 (11,112,690 rials)
- ※ 정부의 보험료는 질병, 출산, 산재 급여의 재원이기도 함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

- 보험료 납부기간 20년 이상인 경우, 남자 60세 및 여자 55세
- 보험료 납부기간 30년 이상인 경우, 남자 50세 및 여자 45세
- 보험료 지속 납부기간 35년 이상, 또는 유해하거나 육체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근무 환경에서 25년 이상 근로한 경우(지속 근무일 시 20년), 연령 제한 없음
- 부분연금 : 보험료 납부 기간 1개월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, 남자 60세 및 여자 55세; 장애 보유 및 보험료 납부 기간 1개월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, 연령 제한 없음; 보험료 납부 기간 10년 미만인 경우, 납부 기간 10년 기준 보험료 충족 위한 미납분 납부 필요
- 근로활동으로부터의 퇴직 필수

○ 장애연금

- 완전장애(소득능력 66% 이상 상실)로 판정되고, 지난 10년 중 적어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하며, 그 중에서도 산재가 아닌 장애 발생 직전 1년 중 적어도 90일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포함해야 함
- 부분연금 : 가입자가 완전장애연금의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10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다면 지급

○ 유족연금

- 사망자가 지난 10년 중 적어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하며, 그 중에서도 사망 직전 1년 중 적어도 90일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포함해야 함
- 또는 적어도 20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거나,
- 사망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였던 경우
- 부분연금 : 사망자가 유족연금의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적어도 1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경우 지급
- 수급권자 : 여성유족배우자나 피부양 남성유족배우자, 20세미만의 아들(대학생, 장애인, 무소득 미혼인 딸은 연령 제한 없음), 피부양 부모(부는 60세 이상, 모는 55세 이상, 장애 이고 다른 연금수급권이 없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)
- 장제비 : 가입자나 가입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퇴직 직전 최종 2년의 가입자 월평균적용소득을 30으로 나누고, 거기에 보험료 납부연수(최대 35년)를 곱하여 산정 지급
- 유해하거나 육체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근무 환경에서 종사한 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료 납부연수 1년당 1.5년으로 계산
- 최저연금월액 : 비숙련노동자의 법정월최저임금(11,112,690 rials)
- 부분연금 : 감액연금 지급
- 급여조정 : 생계 비용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
○ 장애연금

- 장애 시작 직전 최종 720일의 가입자 월평균적용소득을 30으로 나누고, 거기에 보험료 납부연수를 곱하여 산정 지급
- 최저연금월액 : 가입자 월평균적용소득의 50% 또는 비숙련노동자의 법정월최저임금(11,112,690 rials)의 100% 중 높은 금액
- 최고연금월액 : 장애 시작 직전 최종 720일의 가입자 월평균적용소득의 100%
- 급여조정 : 생계비용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
○ 유족연금

- 유족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받거나 수급 자격이 있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액의 50%.
- 고아연금 : 고아 1인당 사망자가 받거나 수급 자격이 있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액의 25%(완전고아에게는 50%)
- 부모연금 : 수급 가능한 부모 1인당 사망자가 받거나 수급 자격이 있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액의 20%
- 최저 유족연금월액 총액 : 비숙련노동자의 법정 월 최저임금(11,112,690 rials)
- 최대 유족연금월액 총액 : 사망자가 받거나 수급 자격이 있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액의 100%
- 부분연금 : 감액연금 지급
- 급여조정 :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- 장제비 : 비숙련 노동자의 법정 월 최저임금(11,112,690 rials)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
7

관리운영기관

- 협력노동사회복지부(Ministry of Cooperatives, Labour and Social Welfare)
 - 전반적 감독
- 사회보장기구(Social Security Organization)
 - 지사 및 지방사무소를 통한 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

<2018년 ISSA 자료>